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7
------	-----

2012. 6. 21.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2년 5월 1일

나. 제안자 : 장환진 의원(찬성자 11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10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1년도 서울시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현황에 의하면 서울시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 자문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는 등

고문 1명당 처리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심지어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고문으로 위촉되고 있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른바 ‘명망가’ 고문 위촉을 지양하고, 비리 전력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직무의퇴를 고르게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기준을 추가 함.(안 제5조제2항)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입법·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입법·법률 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 자문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경우는 물론, 자문 건수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 입법·법률 고문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서울시는 1998년부터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권리의식 증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 쟁송사안 등 법률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입법·법률 고문 운영현황>

구분	정원(명)	현원(명)	임기	자격
입법고문	15	11 (법률고문겸임 6명)	3년(연임가능)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법률고문	50	42	3년(연임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 입법·법률고문 운영현황을 보면, 입법고문은 정원 15명(현원 11명)이며, 법률고문은 정원 50명(현원 42명)임.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2011년도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수입 받은 소송 사건은 1인당 평균 8.6건이며, 법률자문은 1인당 평균 5.2건의 소송 및 자문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서울특별시 법률 고문 구성현황>

구분 현원	임기만료	경력별	연령별·성별
42명	○'12년 - 상반기 : 1명(2%) - 하반기 : 3명(8%) ○'13년 : 19명(45%) ○'14년 : 19명(45%)	○ 판 사 : 17명(41%) ○ 검 사 : 6명(14%) ○ 변호사 : 19명(45%)	○ 30대 : 1명(2%) ○ 40대 : 8명(19%) ○ 50대 : 20명(48%) ○ 60대이상 :13명(31%) ※여성 : 4명

※ 수입현황(2011년)

- 소송사건 대리 : 1인당 평균 8.6건(총 363건)
- 법률자문 수행 : 1인당 평균 5.2건(총 220건)

- 이들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정액고문료로 월 20만원, 입법·법률자문료로 1건당 1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중요 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또는 시정현안에 대한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할 경우 별도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실적에 따르면, 【참고자료-1】 고문변호사라는 직함만 유지하고 실제로 고문 또는 자문실적이 없거나, 일부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직무 처리건수가 편중되어 자문건수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 입법·법률고문단 운영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종합행정인 서울시 입법·법률자문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적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입법·법률 고문에게 직무의뢰를 고르게 안배하도록 명문화하고, 고문들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사항별검토

1)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의뢰(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입법·법률고문에게 고르게 배분되도록 명

문화하고 있음.

- 이는, 고른 사건분배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일부 고문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그러나 시정현안에 따라 자문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입법·법률고문 중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 지식의 정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고르게 분배한다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문에게도 분배해야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직무전수의 편중을 ‘고르게 분배’하도록 한 강제규정보다는 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권고규정으로 다소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됨.

2) 입법·법률고문의 자격기준(안 제5조제2항)

- 법률고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위촉토록 하며, 벌금내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변호사 자격정지 등과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고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제한 기준을 신설하였음.
- 이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징계 전력자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로써,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동 개정안(제5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금고이상의 실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법의 형평성·정합성 차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음.

3)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안 제7조)

- 현행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연임제한 등을 통해 많은 변호사들에게 고문으로 위촉될 기회를 넓게 보장하고, 일부 고문들에게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집행부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문인 경우에도 최대 위촉가능기간이 4년에 불과하여, 승소율 제고 및 시정에 대한 신뢰확보 등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동 규정을 다소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만약 연임을 제한(부산시청의 경우 임기 3년, 1회 연임을 제외하고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의회에도 연임제한 규정은 없음)하게 되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문을 4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촉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고문들에게 자문을 받을 기회를 막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고문변호인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 검토

- 서울시에서는 동 개정안의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바 있음. 그러나 동 개정안의 취지는 서울시가 그 동안 고문변호사라는 직함만 올려놓고 실제로 고문이나 자문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잘못 운용해왔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도이지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여 서울시의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규정으로, 법률고문에 대한 균등한 직무의뢰, 법률고문의 임기, 부칙에서 경과 규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정의견대로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수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p>제3조(업무) ①~② (생략) <u><신설></u></p> <p>③ (생략)</p>	<p>제3조(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가 <u>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업무)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u>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위촉) ① <u>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② <u>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제5조(위촉) ① <u>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u>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u>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u>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u>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u>법을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u> 	<p>제5조(위촉)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u>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u>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u>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u>법을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u>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p>제7조(임기)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단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7조(임기)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단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7조(임기) ①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u> ② <u>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u></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시의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고문에 대한 균등한 직무의뢰, 법률고문의 임기, 부칙에서 경과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직무건수의 편중을 ‘고르게 분배’하도록 한 강제규정보다는 법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권고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3조제3항).
-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규정 중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법의 형평성·정합성 차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2항제3호).
-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고문변호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함(안 제7조).

- 부칙에서,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함(안 부칙 제2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77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1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서울시의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고문에 대한 균등한 직무의뢰, 법률고문의 임기, 부칙에서 경과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직무건수의 편중을 ‘고르게 분배’하도록 한 강제규정보다는 법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권고규정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규정 중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법의 형평성·정합성 차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고문변호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함(안 제7조).

라. 부칙에서,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직무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를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업무) ①~② (생략) <u><신설></u></p> <p>③ (생략)</p>	<p>제3조(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업무)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위촉) ① <u>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② <u>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제5조(위촉) ① <u>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2.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4. <u>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5. <u>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u> 	<p>제5조(위촉)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임기)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단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7조(임기)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단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7조(임기) ①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u></p> <p>② <u>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갓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갓춘 사람 중에서,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업무)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③ (생략)</p> <p>제5조(위촉) ① <u>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② <u>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제7조(임기)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u></p>	<p>제3조(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촉) ① <u>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p>제7조(임기) ① <u>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u></p> <p>② <u>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칙 ></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입법·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둔다.

제3조(업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다만,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입법업무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2. 시장으로부터 수입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법 및 법률고문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원) ① 입법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입법고문 중에서 주임고문 1명을 둘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법률고문 중에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에 주임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임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서울특별시의 각실과장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자문 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회의) 시장은 시정시책사업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고문료·회의비지급)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고문료와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회의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